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즁진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 2899 2021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10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(2021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)

가. 제안이유

-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개정 ('21. 6. 23. 시행)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(서울특별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등)의 반영을 통해,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과의 원활한 조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의 내실을 기하고.
- 모법 없이 제정·시행되어 온 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 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를 폐지하고,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)
- 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에서 정하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법에 맞추어 보완함
 - 1) 법에 따라 목적 조항에 모법을 명시(안 제1조)
 - 2) 법 제2조의 정의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(안 제2조)
- 그 밖에 법에서 서울시장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
 - 1) 법 제6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
 - 2)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

연차별 실행계획 수립(안 제7조 및 제8조)

- 3) 법 제11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(안 제16조)
- 4) 법 제14조의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(안 제17조)
- 5) 법 제23조의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)
- 6)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(시장 → 구청장) 등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: 2021. 7. 15. ~ 2021. 8. 4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○ 동 제정조례안은 「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보행안전법"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과 시민의 책무, 보행 안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, 부칙을 통해 모법없이 제정·시행되어 온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(이하 "기존 조례")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관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안 제1조(목적)는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시하는 것이며, 안 제2조(정의)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 는 것임
- 보행안전법에서는 "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", "보행안 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", "보행환경개 선사업의 평가", "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", "공공시설물등 통합설 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" 등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 이에

필요한 사항을 동 제정조례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안 제1조의 제 정목적과 부합하다 할 것이며

안 제2조는 보행안전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("보행자길")를 새롭게 정의하고, 기존 조례의 용어중 관련법 규정과 상이한 용어("보행환경")는 일치시켜 조례 적용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■ 기본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안 제3조(기본책무)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,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며, 안 제4조(시 민의 권리와 의무)는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보행 할 수 있는 시민 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
- 보행안전법 제4조제1항¹) 및 제2항²)에서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 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

¹⁾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²⁾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정조례안에 시장의 기본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임

- 또한 보행안전법 제3조제1항³)에서는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 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에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 으로 사료됨
- 다만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의무를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보행안 전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

관련 연구결과⁴⁾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를 40~50% 감소시키고 전방주시율은 15% 정도 떨어뜨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

스마트폰을 보며 걸어다는 사람을 빗댄 '스몸비'5)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인식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민의 의무로 이를 명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정된다 할 것임

³⁾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(보행권의 보장)

① 국가와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<u>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</u>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⁴⁾ 이수일 · 김태호(2016), "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시각 인지특성 연구",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

⁵⁾ 스몸비(Smombie) = 스마트폰(Smart phone) + 좀비(Zombie)

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 관련(안 제6조)

- 안 제6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)는 5년마다 "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"(이하 "기본계획")의 기초가 되는 "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"(이하 "실태조사")를 시행하고 "보행교통 개선지표"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보행안전법 제6조6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7)에서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을 통해 시장의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6조제2항의 실태조사 항목, 안 제6조제3항의 보행교통 개선 지표 수립, 안 제6조제4항의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은 보행안전 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

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(이하 "지속가능교통법") 제37조8)

⁶⁾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)

① <u>특별시장</u>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<u>5년의 범위에서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<이하생략>

⁷⁾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)

① <u>특별시장</u>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 <이하생략>

⁸⁾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(보행교통 실태조사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·<u>특별시장</u>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,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
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⁹⁾에서 시장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,

향후 보행정책의 효과성 판단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한 점, 지속가 능교통법 제37조제6항에서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, 보행안전법과 지속가능교통법에서 정하는 실태조사가 조사시행시기, 조사항목 등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정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-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관련 (안 제7조 및 제8조)
- 안 제7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는 시장이 5년 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관련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8조(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)는 매년마다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

별·지역별 <u>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</u>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·공 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④~⑤ < 생략>

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.

⁹⁾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(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)

① <생략>

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^{1.}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신호 체계, 보도시설 확보, 보행속도, 보행밀도 등

^{2.}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안전시설 확보, 가로등 조명수준, 차량속도 등

^{3.}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시설물 유지보수,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,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

^{4.}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

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임

- 보행안전법 제7조의210)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, 같은 법 제8 조11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2)는 매년 2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동 제정조례안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- 다만 보행안전법 제7조의2제1항 후단에서 '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른 법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'고 규정하고 있고

서울시는 "지방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¹³⁾"을 통해 수립시기가 유사한 여러 교통관련 계획들을 모아 일괄용역 발주할

¹⁰⁾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(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

① <u>특별시장등은</u> <생략> <u>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</u>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^{1. 「}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

^{2. 「}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

^{3.}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·보행 관련 계획

②~⑩ <생략>

¹¹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(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)

① <생략>

② <u>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·교통 관련 계획(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)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③ <생략>

¹²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)

① <u>특별시장등은</u>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<u>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2월</u> <u>말일까지 수립</u>해야 한다.

②~④ <생략>

¹³⁾ 교통정책과-19765(2018.8.1.)

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법정계획까지 고려하여 수립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정계획들과 일괄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

■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관련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(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)는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시 준수해야하는 기준을 설정하고, 기준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 제6조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
- 기존 조례 제6조는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 는 점에서 동 제정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서울시는 동 제정조례안 제10조에 따라 관련한 세부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
- 한편 기존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"등산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"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14)된 상황으로

보행안전법 제2조15)에 따라 등산로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

¹⁴⁾ 의안번호 2816호(발의자 : 김경 의원, 발의일 '21.10.15.)

¹⁵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^{1. &}lt;u>"보행자길"</u>이란 보행자(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"보행자길"에 포함되어 시장이 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

-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 관련 (안 제11조~제 15조 관련)
- 안 제11조~제15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보행안전위원회")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
- 새롭게 신설¹6)된 보행안전법 제8조의3제1항¹7)에서는 시장은 보행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제8조의3제2항¹8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4제4항¹9)에서는 보행안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

을 말한다.

가~사. <생략>

아. 그 밖에 통학로, 탐방로, 산책로, <u>등산로</u>, 숲체험코스, 골목길 등 <u>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</u>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
- 16) 법률 제17694호 시행 2021. 6. 23, 대통령령 제31806호 시행 2021. 6. 23
- 17)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
 -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<u>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~ 3. <생략>

- 18)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
 - ② <u>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해당 지방자치단체</u> 의 조례로 정한다.
- 19)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
동 제정조례안에서 보행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²⁰⁾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의 해촉, 위원회 운영, 운영세칙 등 보행안전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보행안 전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임

다만 보행안전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는 '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 원회의 기능을 대신'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

도시교통실 내에 이미 설치하여 운영중인 위원회 중 보행안전위원 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무부별한 위원회 설립·운영을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임

■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관련(안 제16조)

- 안 제16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)는 시장이 보행환경개선사업 의 시행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보행안전법 제11조21)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, 같은 법 시

²⁰⁾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,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21)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)

① <u>특별시장등은</u>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<u>그 사업의 성과 등을</u> <u>평가하여야 한다.</u> <이하생략>

행령 제10조²²⁾는 사업시행전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시장의 사무를 명시하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에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
○ 보행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²³⁾중에 있으나 모든 사업마다 사업시행전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완료후 사업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

동 제정조례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관련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경우 자치구 공모 등 사업 추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평가를 위해 사전에 평가항목, 평가방법, 평가기간 등 내실있고 철저한 평가계획 수립과 사업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임

■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관련(안 제17조)

○ 안 제17조(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)는 시장이 보행환경개선지 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을 권고할 경우 이를 조치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

²²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)

① <u>특별시장등은</u>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.<생략>

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생략>

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^{23) &#}x27;13~'21년 보행환경재선지구 및 보행환경개선사업: 총60개소(사업완료 52개소, 추진중 8개소)
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

- 동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법 제14조²⁴)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 환경개선지구에서의 불법시설물 우선적 정비,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, 매연, 냄새, 먼지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필요 한 조치 권고 및 이에 따른 지원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것임
- 다만 노상적치물²⁵⁾, 옥외광고물²⁶⁾ 등 불법시설물은 여러 기관 및 부서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, 도로상 소음, 매연, 냄새, 먼지 등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관리부서를 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시설물 정비 및 관리체계 마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할 것임
-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, 운영 등 관련(안 제18조 ~ 제 20조)

²⁴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(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)

① <u>특별시장등은</u>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<u>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(</u>이하 이 조에서 "불법시설물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 <생략>

② <생략>

③ <u>특별시장등은</u>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, 매연, 냄새,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<u>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</u>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²⁵⁾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(도시교통실에 두는 과)

① 보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다. 13.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

²⁶⁾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(도시계획국에 두는 과)

⑩ 도시빛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 6.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

- 안 제18조~제20조는 도로표지판, 가로등, 교통신호등, 교통표지 판,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 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(이하 "협의회")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것임
- 보행안전법 제23조27)는 도로관리청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고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28)제5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협의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- 다만 보행안전법 제23조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공공시설물의 통합설치 등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볼 때 향후 협의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성계획 수립과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²⁷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(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「도로법」 제23조에 따른 <u>도로의 관리청은</u> 도로표지판, 가로등, 교통신호등, 교통표지판, 전신주,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(이하 이 조에서 "공공시설물 등"이라 한다)으로 인하여 <u>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・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,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<u>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(이하 이</u>조에서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③ <생략>

²⁸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(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)

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(「도로법」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~ 5. <생략>

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<생략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.

■ 권한의 위임 관련(안 제22조)

○ 안 제18조는 보행안전법 제28조제3항²⁹⁾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,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, 보행자전용 길³⁰⁾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

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, 철저한 안내 및 서울시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치구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

○ 다만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를 운영중에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위임사항을 개별 조례마다 규정하기 보다 사무위임 조례에서 일원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

■ 기존 조례 폐지 관련(부칙 제2조)

○ 동 제정조례안이 마련될 경우 기존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고 사용 용어도 차이가 있어 관련 업무추진시 조례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동 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 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
²⁹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 장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³⁰⁾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19호(2017.4.6.)

⁻ 보행자정용길 지정고시 : 중구 남대문로5가 526일대 "서울로7017 본선"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보행권"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2. "보행자길"이란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.
- 3. "보행환경"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·생태적·역사적·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,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
 - 2.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
 - 5.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- 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서울특별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)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5년마다,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,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·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신호 체계, 보도시설 확보, 보행속도, 보행밀도 등

- 2.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안전시설 확보, 가로등 조명수준, 차량속도 등
- 3.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: 보행시설물 유지보수,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,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
- 제7조(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 - 1. 역사적 전통,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
 - 2.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
 - 3.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 - 4.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한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.
- 제8조(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9조(보행안전문화 확산)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
 - 2.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
 - 3.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
 - 4.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0조(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)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·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
 - 6. 횡단보도의 설치·정비에 관한 사항

- 7.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8.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
- 9.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10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)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- 1.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위촉직 위원: 공공기관, 연구원, 학교, 기업, 민간단체 중에서 보행교

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2. 당연직 위원: 보행친화정책 업무 소관 실·국장, 소관 과장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행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.
 -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전문가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6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)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 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
- 2. 공동체의 교류 증가,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
- 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를 진행하며,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) ① 시장은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·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의장은 도시교통실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
 - 2.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·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
 - 3.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

- 의 관리기관의 직원
- 4.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
- 5. 그 밖에 보행,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.
- 제19조(협의회 운영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-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- 제21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2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 - 1.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
 - 2.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
 - 3.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(車馬)의 운전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
- 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.
- 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·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2조제2호 중 "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2조제1호"를 "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 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2조제2호"를 "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

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"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2조제1호"를 "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 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2조제2호"를 "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"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"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5조제1항"을 "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"으로 한다.